

회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정관 제6조 4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자격 및 구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연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
2.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회원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운영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다음 연도 연회비 납부 시까지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2. 후원회원의 자격은 첫 정기 기부금 납부 시부터 탈퇴 처리완료 시점까지이다.

제3조(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존 정기 후원회원이 운영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운영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운영회원은 개인회원을 말하며 단체 또는 법인은 가입할 수 없고, 후원회원은 개인, 단체,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④ 지부는 기업관계정책 등 국제엠네스티 정책 기준에 따라 후원회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제한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운영회원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후원회원에 대하여는 제2조와 제3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회비) ①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동·청소년 등의 운영회원을 위해 다른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운영회원은 회비의 납부유예, 감면 또는 면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임의탈퇴) ① 운영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탈퇴를 지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원자격은 회원탈퇴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상실된다.

③ 운영회원 탈퇴 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자격상실) 운영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연회비 납부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명된 경우

제8조(운영회원의 권리) ① 운영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

2. 이사회 및 총회 회의자료·회의록, 국제정책문서 등을 요청할 권리

3. 그룹을 구성하여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권리

4. 기타 규정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지부의 사무처 직원인 운영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퇴사 후 2년 간 운영회원이 선출하는 이사회 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운영회원의 의무) 운영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제8조에서 정한 의무

2. 기타 규정 등에서 규정한 의무

제10조(정책 및 활동원칙 준수) ①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와 지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원은 활동에 있어 다음 각호의 활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회원은 정치적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2. 운영회원은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
3. 운영회원이 지부를 대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거나, 지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하거나, 타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지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무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회원활동조직) ① 운영회원은 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그룹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 ① 지부의 운영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운영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시기와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조(징계) ① 징계할 수 있는 운영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지부의 허가 없이 문서·장부·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때
2. 지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私用)한 때
3.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폐 및 폐기하여 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지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 때
5. 정관 제9조 3항 1호와 4호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 자격정지: 정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운영회원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명: 제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영회원자격이 복구되지 않으며, 운영회원

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의 운영회원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영구제명: 운영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운영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③ 징계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운영회원이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운영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여부 및 징계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적어도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대상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전단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한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 그 결과를 재심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7. 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징계 사실을 해당 운영회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 도달 시점부터 발효된다.

8. 제 2항 1호와 2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 2항 3호와 4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안건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운영회원자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운영회원상호간 분쟁조정) ① 이사회는 운영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회원증명서 발급) 운영회원이 운영회원증명을 요청할 경우 지부는 연회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그 밖의 운영회원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회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13.12.31 기준으로 정회원인자는 2016.12.31까지는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부칙 <2015년 3월 21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